제88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(특허청)	1. 합동사무소 설치 시 규약 제출 의무 신설(신설) o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–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 제출하도록 함 ▶ 변리사법 시행령 제13조의2	1.비중요
2	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특허청)	1. 합동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의무 신설 (강화) o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구체적 내용과 기타 합동사무소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– (규약내용) ①합동사무소의 명칭 · 소재지, ②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③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– (신고사항) 합동사무소를 설치 · 해산하거나 명칭, 주소지, 규약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신고 절차 규정 및 서식 신설 ▶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	1.비중요
3	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선원 노동권 · 인권 교육 세부기준 마련(신설) o (교육 방법) 교육 수강 대상에 따라 기본, 심화, 외국인 기본, 외국인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초기 3시간 및 재교육 2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매년 실시 o (교육 내용) 선원의 노동권, 인권에 대한 기초 개념 및 성인지, 다문화 등 다양한 인권 관련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 ▶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의5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방법 변경(강화) ㅇ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방법을 벽체 중심선 기준에서 내부선 기준(벽면 사이의 거리(안목치수))으로 변경 ▶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	1.비중요
5	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 노무제공자의 범위 확대(강화) ㅇ 산재보험 적용직종의 전속성 · 소득요건으로 산재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개인대리점주,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들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 ㅇ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직종으로 지정 ▶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2. 플랫폼 운영자의 자료제출(신설) ㅇ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플랫폼 이용사업자 정보* 및 플랫폼 종사자의 정보**를 규정 * 사업자 · 법인등록번호, 연락처, 사업주 · 대표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** 플랫폼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및 노무제공일자 · 시간 및 보수 ▶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1	1.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(강화) ○ 제작 ·운행 이륜자동차 동시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* (현행) 102~105dB → (개정안) 175㏄ 초과 95dB, 175㏄ 이하 80㏄ 초과 88dB, 80㏄ 이하 86dB ▶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, 제40조	1.중요
7	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 무선식 감지기 기능 관련 기술기준 마련(강화) ○ 감지기와 무선식 문화재용 속보기 및 간이형 수신기 간 무선기능기준을 신설하고,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 등 표시사항을 강화 ▶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, 제37조	1.비중요
8	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수신기 기능 관련 기술기준 마련(강화) ○ 수신기의 경보작동신호 주파수를 설정하고, 수신기와 무선식 경종,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간 무선기능 기준을 신설하며,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 등 표시사항을 강화 ▶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, 제15조의2, 제17조, 제17조의2, 제2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무선식 중계기 기능 관련 기술기준 마련(신설) ㅇ 중계기의 경보작동신호 주파수 등을 설정하고, 중계기와 무선식 경종·시각경보장치 간 무선기능 기준을 신설하며,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 등 중계기 표시사항을 강화 ▶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, 제3조의2, 제16조	1.비중요